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무위원 이 영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연 월 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개정(법률 제19416호, 2023. 5. 16., 일부개정)의 후속 조치로서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함

2. 주요내용

가.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보고 및 변경보고 신고 서식 규정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8. 21. ~ 10. 2.)

중소벤처기업부령 제 호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 (복수의결권주식의 보고) 영 제11조의16제3항에서 “중소벤처기업
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”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서식] <신 설>

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(발행, 중요사항 변경) 보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
			30일
보고인	업체명	대표자	
	사업자등록번호	법인등록번호	
	벤처기업확인서 발급번호		
	전화번호	전자우편	
	소재지		
보고내용	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의 성명 및 발행수량 (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가 여럿인 경우 모두 기재)		[성명] (주)
	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자		
	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의 수		
	창업주 보유 보통주 납입 여부		[여 / 부]
	(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) 전환일자		
	전환사유		

누적 투자유치금액 및 창업주 지분을 변화
(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가 여럿인 경우 각각의 지분율을 모두 기재)

투자일자	투자유치금액 (특수관계인 포함)	투자유치금액 (특수관계인 제외)	투자 전 창업주 지분율	투자 후 창업주 지분율
	원	원	%	%
	원	원	%	%
계	원	원		%
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6조의14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의 [] 발행 [] 중요사항 변경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

보고인 제출서류	1. 벤처기업의 정관 1부 2. 주주총회 의사록(정관 변경 및 복수의결권주식 발행) 각 1부 3. 벤처기업의 주주명부 1부	수수료 없음
----------	--	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(복수의결권주식의 보고) 영</u> <u>제11조의16제3항에서 “중소벤</u> <u>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</u> <u>서”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한</u> <u>다.</u>